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에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는 의무를 부과함(안 제10조의2).
-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,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함(안 제23조).
-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,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며,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, 설명회, 사업장 게시,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리도록 함(안 제36조 등).
- 재해 원인조사의 대상에 화재·폭발, 붕괴 등으로 발생한 일정 요건의 산업재해를 추가하고,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별도 원인조사 실시의 근거 및 사업장 출입, 관계자 면담, 자료 제출 등 조사 권한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56조).
-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별도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동 보고서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함

(안 제56조의2 신설).

II. 검토의견

안 제56조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의 규명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재해 원인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그런데, 안 제56조제3항에 원인조사와 무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, 관계전문가 등의 재해 원인조사를 위한 사업장 출입, 관계자 면담 및 자료의 제출 요청 권한 등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에서 규율하였음.

실체규정 법제 시 관련 있는 내용들의 경우 가까운 위치에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¹⁾ 관계전문가 등의 재해 원인조사에 대해 규율한 안 제56조제2항 및 제5항은 연속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제5항의 내용을 제3항으로 이동하였음.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56조(중대재해 원인조사 등) 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56조(중대재해 원인조사 등) ① (생 략) <u>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 시에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 규명을 위해 공단 또는 해당 재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(이하 “관계전문가”라 함)에게</u>	제56조(중대재해 원인조사 등) ① (생 략) <u>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 시에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의 규명을 위하여 공단 또는 해당 재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(이하 “관계전문가”라 함)에게</u>

1) 국회 법제실, 법제기준과 실제, 2024, p.265.

②·③ (생략) <신설>	<u>문가”라 한다)로 하여금 재해 원인조사를 별도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.</u> <신설> ③·④ (생략) ⑤ 제2항에 따른 원인조 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중대재해 등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 기 위하여 해당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출입하 거나 해당 사업장의 관계 자에 대한 면담 및 조사 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.	<u>전문가”라 한다)에게 재해 원인조사를 별도로 실시 하도록 할 수 있다.</u> ③ 제2항에 따른 원인조 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중대재해 등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 기 위하여 해당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출입하 거나 해당 사업장의 관계 자 면담 및 조사에 필요 한 자료의 제출 요청 등 을 할 수 있다. ④·⑤ (생략) <삭제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

그 밖에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
요하다고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이 은 정)